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1905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희 · 이주희

용혜인 · 백혜련 · 맹성규

정춘생 · 전진숙 · 권향엽

김 윤 · 이수진 · 황명선

임미애 · 홍기원 · 손 솔

문대림 · 박지원 · 김준형

양부남 · 안태준 · 김 현

김남국 · 김교홍 · 조계원

김선민 · 문정복 · 소병훈

고민정 · 백선희 · 강준현

유동수 · 이춘석 · 문금주

서왕진 · 성일중 · 박홍근

안규백 · 이재관 · 전종덕

송재봉 · 송옥주 · 염태영

윤종오 · 김소희 · 김남근

박은정 · 이학영 · 부승찬

이연희 · 김주영 · 이기현

김동아 · 김성범 · 복기왕

이언주 · 박해철 · 곽상언

박희승 · 허성무 · 채현일

조은희 · 최혁진 · 허종식

장종태 · 박 정 · 김희정

박지혜 · 민병덕 · 유용원

김미애 · 허 영 · 김병주
박주민 · 김정재 · 정혜경
이재정 · 이광재 · 김준환
서영석 · 윤종균 · 이상식
오세희 · 강경숙 · 모경중
김현정 · 김재원 · 서미화
한준호 · 서영교 · 신장식
최기상 · 진선미 · 정성호
의원(93인)

주 문

가. 친밀관계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들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의 유형과 범죄양상은 다르지만, 폭력의 위협 신호가 반복되었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등 현행 보호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현행 법률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디지털 통제, 강압적 통제 및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에도 지속·반복되거나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폭력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자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